

의안번호	2204374
의 퇴 인	이수진의원
회 답 일	2024. 10. 7.
추계번호	24D4023

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조(정의), 제 11조제1항 후단 신설(실태조사)	취약계층 청년의 정의에 가족돌봄청년, 고립은둔청년, 그 밖에 사회적·경제적 원인으로 고용·교육·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 ¹⁾ 으로 분류하고, 정부는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실태를 별도로 조사하여 공표할 수 있음	재량규정
2	안 제4조제4항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아니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함	의무규정
3	안 제20조(청년 주거지원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을 위한 주거 여건 조성 및 안전한 주거 환경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1) 안 제3조(정의) 5. “취약계층 청년”이란 고용·교육·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을 말한다.

가. **가족돌봄청년**: 부모가 사망·사고·장애·질병·가출 등의 사유로 부양능력을 상실하거나 부양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게 되어 스스로 가족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

나. **고립·은둔청년**: 사회적·경제적·문화적·심리적 원인 등으로 정상적인 사회활동과 외부와의 교류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청년

다. 그 밖에 사회적·경제적 원인으로 고용·교육·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3조(정의), 제11조제1항 후단 신설(실태조사)	미대상: 개정안에서 정부는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실태를 별도로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, 이미 정부에서는 취약계층 청년 실태조사,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, 은둔형 외톨이 청년 실태조사를 아래와 같이 별도로 실시 중임 취약계층 청년 실태조사: 국무조정실에서 2021년 ‘취약계층 청년 범위 및 지원에 관한 연구’ 예산으로 3,636만원 소요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: 보건복지부에서 2022년 ‘가족돌봄 청소년 실태조사’ 예산으로 1억원 소요 은둔형 외톨이 청년 실태조사: 보건복지부에서 2023년 ‘고립·은둔 청년실태조사’ 예산으로 9,900만원 소요
2	안 제4조제4항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3	안 제20조(청년 주거지원)	

2. 상세 사유

□ 청년의 생활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(안 제4조제4항 신설)

- 개정안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아니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
-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대상, 지원 내용 등을 알 수 없어 현시점에서 합리적인 추계가 어려움

□ 청년 주거지원(안 제20조)

- 개정안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을 위한 주거 여건 조성 및 안전한 주거 환경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
- 그러나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을 위한 주거 여건 조성 및 안전한 주거 환경 확보를 위한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대상, 내용 등을 알 수 없어 현시점에서 합리적인 추계가 어려움

- 다만, 부처별로 취약계층 청년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주거 지원 사업은 아래와 같음
 - 국토교통부의 ‘행복주택출자(2024년 5,288억원)’, ‘행복주택융자(2024년 8,383억원)’, ‘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(2024년 104억원)’
 - 보건복지부의 ‘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(보호종료아동) 지원(2024년 454억원)’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여은구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여은구	02-6788-4673	cecil@assembly.go.kr